

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

접수번호	접수일	
------	-----	--

1. 인쇄소 인적사항

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
사업장 소재지	

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.

인쇄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.

세무서장

2.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자 인적사항

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
사업장 소재지(주소지)	사업자등록번호

3.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

년 호

4.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

과세문서 명칭	통당 세액	인쇄통수	비고

첨부서류

없음

수수료
없음